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 협력체계 조례안

심사 보고서

| | |
|------|------|
| 의안번호 | 3224 |
|------|------|

2025. 12.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10월 20일, 김경 의원 외 10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 제6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경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출자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 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되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중복개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 중복개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시장이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문화행사 계획의 사전등록 및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 라.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III.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제정안의 개요

- 동 제정안은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 행사의 중복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 구축, 행사 계획의 사전 등록 절차 마련,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설치 및 자원 공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나.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현재 콘트롤 타워 없이 각 부서별로 축제·행사 사업을 개별적으로 편성하고 있어, 이로 인한 중복 개최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예산 항목으로는 행사운영비, 보조금, 민간위탁금 등 다양한 형태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 항목 구분을 통해 행사의 중복·남발을 관리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축제·행사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만, 통제·관리 및 감독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축제·행사의 중복 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음.

○ 또한, 관련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결과를 서울시가 처한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¹⁾,

런던²⁾과 뉴욕³⁾ 등 과잉 축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노력이 이루어진 사례는 향후 서울시 축제·행사 관리의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각 부서 간의 협력과 통합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동 제정안은 중복된 문화행사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해외 사례 및 관련 연구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가 문화행사에 대한 통제와 관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다. 제정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총 8개조로,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 제5조(협력협의회) ▲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 제7조

1) 「인천시 행사·축제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인천연구원, 2025), 지역축제 성공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손동욱 등, 2025)

2) 'Notting Hill Carnival'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거리 축제로, 과밀 혼잡, 축제 정체성 훼손 등의 논란이 일자 "주최단체 중심 운영"에서 "시 주도형 관리체계" 전환함. 전문 비영리법인을 설립해(2018) 일부 행사와 통폐합하고 특정 지역에 과도한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형 프로그램'으로 재편하였음.

3) 'Electric Zoo Festival'은 매년 열리는 대형 음악 축제로, 2023년에는 개막 전날 갑작스러운 취소, 입장 지연, 보안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많은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대두됨. 취소 사유로 도시 공원 부서가 안전상 허가를 거부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자 행사 허가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실시간 인원 집계를 도입하는 등 군중 관리에 대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였음.

(성과평가) ▲ 제8조(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항(제목) | 주요내용 요약 |
|--------------------|---|
| 제1조(목적) | 문화행사 중복개최로 인한 예산 낭비 및 행정 비효율 감소, 정보공유·협력 촉진, 예산의 합리적 사용 및 시민 문화향유 확대목적 규정 |
| 제2조(정의) | 문화행사·정보공유·협력체계·중복개최 등의 기본 개념 정의 |
|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 서울시 직접 시행 또는 지원 행사를 대상으로 적용, 시장 책임 하에 정보공유·협력체계 구축 가능, 자치구·산하기관 협조 의무 |
|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 문화행사 계획단계에서 일정·장소 등 사전 등록 및 공유 절차 마련, 중복개최 우려 시 협의 권장 |
| 제5조(협력협의회 설치) |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설치, 10명 이내 구성, 운영 방향·중복 방지·자원 공유 방안 심의·자문 |
| 제6조(위원 구성 및 운영) | 위원 구성 기준과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가능 규정 |
| 제7조(성과평가) |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 |
| 제8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함 |
| 부칙 | 공포일로부터 시행 |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서울시 및 그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가 개최하는 문화행사와 서울시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동 제정안의 대상으로 정하고, ‘서울시 문화행사의 정보공유·협력체계’의 일반조례임을 밝히고 있음.

안 제4조는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정보공유의 필요성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자문기관인 ‘문화행사 협력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는 문화행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민관 공동 자원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자원공유 및 공동행사 추진에 협력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안 제1조~제3조)

- 서울시는 현재 각 부서별로 산재된 문화행사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중복 개최와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은 서울시 및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와 서울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유사 축제·행사를 통합하거나 조정하고자 함.
- 다만, 서울시가 주관하는 문화행사 외에도 자치구와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까지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어 법령 및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⁴⁾은 사무배분기준으로써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무 등을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출자·

4) 「지방자치법」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도

-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및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 조례안이 서울시 및 소속 기관, 출자·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임.

- 민간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간단체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강제할 수 없는바 안 제3조 제4항과 같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정보공유 및 사전등록(안 제4조)

- 안 제4조는 서울시,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에 대해 문화 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의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서울시,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를

입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운바 안 제4조는 문화행사의 정보공유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협의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4항에서 관련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는 이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MOU 혹은 협약서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동의를 기반으로 의무를 상호 간에 부여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3) 협력협의회(안 제5조)

- 안 제5조는 문화행사 중복개최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협력협의회에 각 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중복된 문화행사를 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서울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변경 등 서울시 축제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협력협의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 축제 기본계획 등 정책의 수립·변경

2. 자치구·민간 축제의 지원 및 육성 방안
3. 시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신설, 통합, 조정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관광자원화 방안
5. 대표축제의 개발 및 개최에 관한 사항
6. 축제평가 및 축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축제환경 조성 및 축제산업 발전 방안
8. 축제 관련 학술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9. 축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전산화 등에 관한 사항
10.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축제의 지원대상 추천에 관한 사항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축제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따라서 협력협의회는 기존 축제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기존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⁵⁾과 인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바,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조항은 축제위원회의 기능 확대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또한, ‘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의견 수렴·자문·논의 중심의 기구를 의미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 동 제정안의 협력협의회는 단순한 협의에 그치지 않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협력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원 안 | 수정의견 |
|---|---|
| <p>제5조(협력협의회)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 <p>제5조(협력위원회) ① -----</p> <p>-----</p> <p>----- 협력위원회 -----</p> <p>-----.</p> <p><삭 제></p> <p><삭 제></p> <p>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p> |

5) 비용추계 결과, 협의회 운영을 위해 연평균 7,633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 |
|---|---|
| <p>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 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p>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축제위원회가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 4. (원안과 같음)</p> <p><u>③</u>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
|---|---|

(4)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민간단체와의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중복개최가 우려되는 행사를 통합행사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자원공유체계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 서울시는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을 통해 공연 후 버려지는 물품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연비 절감과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먼저, 안 제6조제1항에서 제안한 자원공유체계와의 유사점을 살펴 보면, 서울시는 공연기자재의 대여와 위탁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고 있으며, 행사와 축제 역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는바 문화행사 자원공유체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공연기자재는 구체적인 물품들(무대 세트, 의상, 소품 등)에

한정되며, 이러한 자원들은 일관된 유형의 자원으로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반면,

행사·축제의 자원은 매우 다양하고, 각 행사마다 필요한 자원의 종류가 달라 공통의 자원 공유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더 많은 유연성과 세부 계획이 요구됨.

예컨대, 무대 기자재와 음향 장비는 동일한 공유체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장소 예약, 주차 공간, 특정 행사 운영 인프라는 각 행사마다 다르게 요구될 수 있음.

- 또한, 행사·축제 자원은 다양한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며, 특정 장비나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의 시설이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수반되므로 실현하기에는 다소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은 사전 정보공유를 통해 중복 개최가 우려되는 행사에 대해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축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기획·홍보·장소제공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그 유인 요소로서는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서울시 민간축제의 경우 연간 100건 이상⁶⁾의 민간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각자 성격이 다른 다수의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개최 시기가 핵심 요소인 축제·행사의 경우 통합·

6) 2023년 92건, 2024년도 134건, 2025년도 150건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향후 해당 조문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 내용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비교적 통합·조정이 가능한 서울시, 사업소 및 자치구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우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동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범 운영을 실시해 그 결과를 세부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5) 성과평가(안 제7조)

- 안 제7조는 서울시의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과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현재 ‘문화예술 축제 통합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재정 지원하는 문화예술 축제의 질적 향상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축제 평가, 모니터링, 컨설팅, 아카이빙, 홍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 업무를 추진함.

이 중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축제 평가 및 모니터링은 축제의 운영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질적 성장을 지원하며, 평가 방법은 전문가 평가, 행정 평가, 관람객 설문 조사, 모니터링 등으로 이루어지고, 매년 평가 항목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

<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2025 문화예술 축제 통합 지원사업 >

| 항 목 | 주 요 내 용 |
|-------------|---|
| 사업 목적 | 서울시 축제 운영 성과 진단 및 기획·운영 분야에 전문적 컨설팅 지원,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서울시 축제의 질적 향상 도모 |
| 추진 방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객관적 평가체계 구축, 축제 기본 요건 체크리스트 개발 - 변화된 환경에 맞춘 평가지표 개선, 축제 주최자 역량강화 지원 -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 |
| 축제 평가 프로세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평가: 전문가 평가, 모니터링 점검, 관람객 설문조사, 행정 평가 - 실행평가: 모니터링 점검, 관람객 설문조사, 행정 평가 |
| 평가 항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제 목표 2. 축제 예산 3. 축제 콘텐츠 및 프로그램 4. 축제 운영 5. 축제 홍보 6. 축제 성과 7. 우수사례 추천(종합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 평가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주체: 전문가, 서울시 + 평가기관 - 설문조사, 현장 점검, 사후 평가 자료 취합 |
| 관람객 설문조사 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축제장까지의 편리성, 홍보 접근성 -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재미, 다양성 - 운영: 프로그램 참여 편리성, 운영 효율성 - 전반적 만족도: 축제 전체에 대한 만족도 |
| 안전 및 친환경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관람객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인력 배치, 비상 대피로 확보 - 친환경 운영: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대중교통 권장 |
| 평가 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평가 지표: 최대 40점(사전 자료 제출, 평가 협조도 등) - 추가 가점: 친환경 축제 운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주민 참여 등 |
| 평가 지표 및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 추천: 축제의 정체성, 조직 안정성, 성장 가능성 평가 - 성과 지표: NPS(순추천고객지수), CVM(경제가치추정) 평가 |

○ 따라서, 새로운 평가 지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성과평가 지표와 비교하여 보완하고, 기존 평가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서울시는 축제 및 문화행사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축제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원 안 | 수정의견 |
|---|---|
| <p>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p> <p>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 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 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 <p>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p> <p>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u>위탁</u>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p> | <p>제7조(성과평가) ①</p> <p>-----</p> <p>-----</p> <p>----- 있으며,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 ③ (원안과 같음)</p> <p>④ ----- 의뢰하여</p> <p>-----</p> <p>⑤ (원안과 같음)</p> |

마. 종합의견

- 동 제정안은 서울시와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문화행사의 현행 운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현재 서울시는 각 부서별로 산재된 축제·행사 사업으로 인해 중복 개최가 반복되고 있으며, 행사운영비·보조금·민간위탁금 등 다양한 회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사전적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행사 정보공유와 사전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협력협의회와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은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적용 대상에 자치구 및 출자·출연기관 등 별도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포함되어 있어 법적 강제력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검토한 바와 같이, 정보 공유 및 사전등록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협의를 권장한 것은 적절한 접근이며, 향후 MOU·협약 체결 등 실질적 협력 기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협력협의회의 기능은 기존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 축제위원회와 중복될 우려가 있어, 별도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는 축제위원회로 기능을 흡수·대체하는 방향이 행정 효율성과 비용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임.
- 자원공유체계의 경우, 공연기자재 공동이용 플랫폼 운영 사례가 참고될 수 있으나, 축제·행사 자원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관리·보관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는 한계가 예상돼 전면 도입보다는 단계적·선별적 시범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성과평가 항목 역시 기존 축제평가 체계와 연계하여 중복을 방지하고, 지표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임.
- 종합하면, 동 제정안은 서울시 문화행사 운영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초틀을 제시하나, 향후 실무 적용 과정에서 일부 한계가 예상되는바 세부 기준 정립과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임.

의안번호
3224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 발 의 | 제 안 자 | 안건 소관 상임위 | 규제철폐 안건 |
|--------------------------|---|---------------------|--------------------|
| | 김경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해당없음 |
| 주요내용 |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도모 <p>〈주요 입법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 구축, 문화행사 계획 사전등록·정보공유 절차 마련 및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 |
| 추진경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 10. 20. 김경 의원 등 11명 조례안 발의 | | |
| 부 서 검토 의견 | 원안가결(<input checked="" type="radio"/>)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 | |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출연·출자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되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 문화행사의 정보공유·협력체계, 계획의 사전등록·정보공유 절차 및 문화협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함 | | |
| 대응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 | |
| 상 임 위 처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 | |
| 담당부서 | 문화정책과 | 팀장 강지연 (☎2133-2512) | 담당 고지민(☎2133-2515)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직위원 10명, 참석위원 7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김경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3224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경, 김기덕, 김원태,
김인제, 박승진, 성흠제,
오금란, 유정희, 임만균,
최재란, 한신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출연·출자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되어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중복개최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 중복개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이 문화행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문화행사 계획의 사전등록 및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 기관, 출연·출자기관, 자치구 등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행사가 시기나 지역별로 중복 개최되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문화행사 관련 기관·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의 합리적 사용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행사”란 서울특별시, 그 소속 기관, 출연·출자기관 또는 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관광 관련 행사를 말한다.
2. “정보공유·협력체계”란 문화행사에 관한 일정, 장소, 주제, 예산 등 주요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상호 협의·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체계를 말한다.
3. “중복개최”란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유사한 주제의 문화행사가 중복되어 예산·인력·관람객이 분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문화행사에 적용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정보공유·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자치구,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유와 협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해당 행사의 사전 등록 및 정보공유를 권장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⑤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중복개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가 일정·주제 등을 사전에 공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사업소, 출연·출자기관 및 자치구는 문화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 행사 일정·장소·내용 등을 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등록·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공유 과정에서 중복개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등록·통보·협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의회) ① 시장은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행사 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행사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방향
2. 중복개최 예방 및 자원공유 활성화 방안
3.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① 시장은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홍보자원 등을 기관 간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공유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공유 또는 공동행사 추진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공시설 대관 시 우선권 부여, 홍보 지원, 공모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중복개최 우려 행사를 협의하여 공동 또는 통합행사로 전환하는 경우, 시장은 기획·홍보·장소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자원공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운영 성과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할 수 있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보공유 실적 및 이용 현황
2. 중복개최 감소 및 협력 사례의 성과
3. 자원공유를 통한 예산 절감 효과

4. 민간단체 참여 및 시민 만족도

-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문화행사 관련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 ④ 평가는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⑤ 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문화행사 중복개최 방지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공유·협력체계 조례안

| 연번 | 조항 | 추계대상여부 | 판단 내용 |
|----|----------------------|--------|---|
| 1 | 제3조(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등) | ×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¹⁾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2 | 제4조(정보공유 및 사전등록) | △ | [시스템 특성상 추계 곤란] 정보공유 및 협의조정 촉진을 위한 비용 ²⁾ 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시스템 특성상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 3 | 제5조(협력협의회) | ○ | [통상적 사례 토대 추계] 협의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각종자료를 활용하여 관련 비용을 자체 추계함 ⇒ 총 38,165천원 소요예상 ^(연평균 7,633천원 소요) |
| 4 | 제6조(자원공유 및 협력지원) | △ | [현시점 추계곤란] 재정적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필요한 지원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워 구체적 추계가 곤란함 |
| 5 | 제7조(성과평가) | △ | [현시점 추계곤란] 성과평가 위탁비용 ³⁾ 이 발생하나 현재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고, 이에 통상적인 사례를 적용하기 어려워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 |

* 그 외 규정의 경우 별도의 비용수반요소가 없을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운영비(안 제5조)

-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 2) [공유정보 관리 특성 고려] 안 제2조제2호의 정보공유·협력체계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의·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통상 공유정보 관리업무 특성상 효율적 정보관리를 위해 관련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구축·운영하거나 기존 시스템에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규정에 의한 비용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3) [성과평가가 위탁가정] 성과평가의 경우 신뢰성 확보 등의 사유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례가 다수이며 이를 고려할 경우 해당규정에 의한 성과평가 실시 또한 위탁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가정함

나. 전제

- (협의회)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방식 활용
 - (위원구성) 위원구성은 10인을 가정⁴⁾(공무원 2인 + 민간위원 8명)
 - (위원임기) 통상적 위원회 임기 등을 고려하여 2년 전제
 - (회의개최) 분기별 1회씩 연 4회⁵⁾ 실시 가정
 - (소요항목) 참석수당 1인 200,000원, 업무추진경비 1인 30,000원, 위촉장 제작비 1인 5,500원 전제
- (발생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매년 소요, 추계기간(2026~2030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예상
- (미고려) 향후 실제 사업추진 형태(현재 구체적 정책 미수립), 물가상승률 등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법

- (자체추계) 서울시 통상적 위원회 운영비 등을 토대로 자체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총 38,165천원(연평균 7,633천원 × 5년)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지출 | ○ 협의회 운영 비용(안 제5조) | 7,655 | 7,600 | 7,655 | 7,600 | 7,655 | 38,165 |
| | 소계(a) | 7,655 | 7,600 | 7,655 | 7,600 | 7,655 | 38,165 |
| 수입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총 비용(a-b) | | 7,655 | 7,600 | 7,655 | 7,600 | 7,655 | 38,165 |

4. 덧붙이는 의견

- [추계액 성격] 예시적·제안적 금액

- 입법취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안은 선제적 입법⁶⁾이므로 구체적 정책수단, 집행 계획 등이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유사 위원회 운영비용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재정분석과에서 정책 추진형태를 임의로 가정하여 자체추계하였음

- [추계액 활용유의] 대략적 규모파악용 자료로 활용권장

-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보다 구체화 될 경우 민간위원 수, 위원구성, 회의개최 주기 등 (다양한 지출결정요인)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추계액은 대략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협의회 최대구성 가정]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위원 최대구성인 10인과 협의회 기능을 고려하여 서울시 문화 관련부서의 장(공무원) 1명, 서울시 예산 관련부서의 장(공무원) 1명 및 전문가 등(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총10명을 임의가정함

5) [서울시 위원회 관련 조례 고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

6) [예산마련 추가논의 필요] 실질적인 정책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 입법조치이나, 관련 예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인 정책수단 결정 및 이를 실현할 예산 마련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재정분석과 |
| 재정분석과장 | 이 선 희 |
| 추계세제팀장 | 김 중 헌 |
| 추계분석관 | 손 제 승 |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문화행사 협력협의회 운영비(안 제5조)

2. 세부추계내역

가. 총비용 = 총 38,165천원(연평균 7,633천원 × 5년)

나. 연도별 소요비용 = (① 참석수당 비용 + ② 업무추진경비 + ③ 위촉장 제작비)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위원회 운영비용 | | 7,655 | 7,600 | 7,655 | 7,600 | 7,655 | 38,165 |

① 참석수당 비용 = 6,400천원

$$= \text{수당단가}(P) \times \text{지급인원}(Q) \times \text{연4회}(T)$$

$$= 200\text{천원}^7) \times 8\text{명}^8) \times 4\text{회}$$

② 업무추진경비 = 1,200천원

$$= \text{경비단가}(P) \times \text{지급인원}(Q) \times \text{연4회}(T)$$

$$= 30\text{천원}^9) \times 10\text{명} \times 4\text{회}$$

③ 위촉장 제작비 = 55천원

$$= \text{제작비용}(P) \times \text{인원}(Q)$$

$$= 5,500\text{원}^{10}) \times 10\text{명}$$

7)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 구분 | 단위 | 단가 | 비고 |
|-----|----|--------------------------------|---|
| 위원회 | 일당 |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8)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에 따라 공무원(당연직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8명에게 지급

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10)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전원지급 전제)